

#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17.

발의자 : 김석기 · 김정재 · 정갑윤  
김재경 · 김현아 · 김승희  
김성찬 · 곽상도 · 김성원  
이철규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음.

하지만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.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,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조 및 제4조).

법률 제 호

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

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00만원”을 “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300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1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화염병의 사용)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5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(생 략)	제3조(화염병의 사용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5천만원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화염병의 제조·소지 등)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·운반·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3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(생 략)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·운반·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00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4조(화염병의 제조·소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3천만원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1천만원</u> -----.